

문산천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문산천의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산천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16년 12월 2일

파주시장



1. 문산천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취지

- 가. 무분별한 낚시·야영·취사 행위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, 하천시설 훼손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
- 나. 하천내 행락객 등 이용자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

- 가. 금지지역 및 구간

하천명	등급	구간		연장	비고
		시 점	종 점		
문산천	국가하천 지방하천	파주읍 백석리 (월통교)	광탄면 창만리 (만장교)	6.4km	신설

- 나. 금지기간(낚시·야영·취사행위) : 연중실시

- 다. 규제이유

-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·야영·취사행위를 금지 할 수 있음

3.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 내 행위 제한사항

-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·야영·취사행위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여 낚시·야영·취사행위를 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9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4. 의견제출

- 가. 의견제출(행정예고) 기간 : 2016. 12. 2. ~ 2016. 12. 22.
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(파주시 시청로 50), 홈페이지 등.
- 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 등)
- 라. 제출기관 : 경기도 파주시청 건설과
 - 주 소 : (우)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paju.go.kr/>
 - 전 화 : 031-940-4672
 - 팩 스 : 031-940-4649

5. 기타사항

- 가. 별도첨부 : 규제영향분석서
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(☎940-467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규제 영향 분석서

I. 분석대상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	문산천 낚시·야영· 취사 행위 금지 구역 지정	2. 구 분					
	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존속 기한 연장
3.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과장 최귀남, 하천관리팀장 임상범, 담당자 윤신영						
4. 근거법령명등	하천법 제46조 제6호			관련 규제수	3		
5.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향분석의 구분 : 비중요 규제 ○ 분석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비용 : 해당 없음 - 피규제자수 : 낚시·야영·취사 이용자(100만명 미만) - 경쟁 제한적 요소 : 해당 없음 -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: 해당 없음 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 규제의 내용	<p>〈신설 규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지 행위 : 낚시, 야영·취사 ○ 금지구간 신설) 문산천 : 월롱교(파주읍 백석리) ~ 만장교(광탄면 창만리) ⇒ 6.4km ○ 금지기간 : 연중(금지구역 지정의 해제일 까지) 	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 강화의 필요성

가. 문제의 정의·내용 및 발생의 원인

- 행락객들의 하천구역내 낚시·야영·취사행위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발생과 하천제방 및 인근 농경지에 오물투기, 노상방변 등으로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
- 하천구역 안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야영행위로, 여름철 국지성 호우에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.

나.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

- 무분별한 낚시·야영·취사행위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반드시 필요함.

다. 규제의 목표설정

- 낚시·야영·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,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을 방지하여 하천환경 개선
-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행락객의 생명보호 등 돌발성 재난피해 예방

2.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

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

-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행락객들로 인한 불편으로 규제에 찬성하고 있으나, 지속적으로 낚시·야영·취사 행위를 해온 외부 행락객들의 반대의견이 예상됨.

나. 기술수준,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

- 기술수준과 관련 없는 규제이며,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간의 시·종점과 중간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, 현지에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계도·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함.

3.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

가.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

- 대체의 효용성 없음.

나.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

- 다른 규제 없음.

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

- 다른 규제 없음.

라.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

- 하천환경 개선과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규제이므로 추가 규제 발생은 없음.

4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

가. 규제의 비용분석

- 낚시·야영·취사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용역 등 인력 투입 비용 소요됨.

나. 규제의 편익분석

- 하천의 환경과 시설을 훼손하는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제한을 통해 자연환경 및 하천 시설물 보호,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,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.

다.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- 안내 표지판 설치, 주민홍보, 단속요원 배치 등 행정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낚시·야영·취사 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한 하천환경 개선으로 휴식공간 제공, 정서 함양 등 주민편익은 크게 증대가 기대되며,
-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석을 금전적 환산에 의한 계량화 비교는 어려움.

5.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

가.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

- 해당 없음

나.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

- 해당 없음

6. 규제내용의 객관성·명료성

가. 규제기준·절차의 명확성 등

-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하천환경을 훼손시키는 낚시·야영·취사 행위를 규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,
- 금지구역에서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연중 오염행위를 규제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것이므로 정부정책의 명확성·일관성·이해 용이함.

나.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

- 법적근거 :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
- 존속기한의 타당성 : 하천환경훼손 행위에 효과적 대응과 인명피해 예방 등 재난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금지구역 지정 폐기(해제)시까지 존속.

7. 행정기구 · 인력 및 예산의 소요

가.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 · 인력 · 예산 판단

- 규제집행을 위한 단속원 배치 · 운영을 위해 매년 15백만원 이상 소요.

나. 기존조직 · 인력 · 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

- 기존 조직 · 인력 · 예산으로 규제업무 가능하나,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단속용역 실시 필요.

8.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·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

가.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

- 해당 없음

나.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

- 해당 없음